

제7편 위원회

1. 위원회설치규정

제1조(목적) 본 대학교의 학사, 학생지도 및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의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각 위원회는 교수위원회, 부속기관위원회, 부속교육기관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의 4종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교수위원회
기획위원회(기획관리처장) (2019.2.8.개정)
평가위원회(총장 지명자)
교과과정위원회(교무입학처장) (2016.12.14.명칭변경)(2019.2.8.개정)
학생지도위원회(학생지원처장) (2019.2.8.개정)
장학위원회(학생지원처장) (2019.2.8.개정)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총장)
입학전형연구위원회(교무입학처장) (2019.2.8.개정)
입학전형자체감사위원회(기획관리처장) (2019.2.8.개정)
입학사정위원회(총장) (2012.7.1.신설)
대학평의원회 (2007.6.14.예산결산자문위원회삭제후 신설)
(기획관리처장) (2003.3.1.1차개정)(2019.2.8.개정)
2. 부속기관위원회
도서관위원회(도서관장)
출판위원회(출판부장)
학생생활상담센터위원회(학생지원처장) (2019.2.8.개정)
사회봉사센터위원회(센터장) (2019.2.8.개정)
카리타스복지연구소위원회(연구소장) (2019.2.8.개정)
대학보사위원회(편집인)
3. 부속교육기관위원회
꽃동네대학교부속요양보호사교육원운영위원회(원장) (2019.2.28.폐원)
4. 기타 위원회
생활관운영위원회(학생지원처장) (2012.9.1. 자구조정)(2019.2.8.개정)
식당관리위원회(기획관리처장) (2019.2.8.개정)
복현실운영위원회(교무입학처장) (2019.2.8.개정)
5. 기타 필요한 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총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명 및 임기) 각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며, 현황을 보고하고,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위원회의 회의 진행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각 기관의 예산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7조(내규의 제정) ① 본 규정에 의한 각종 위원회는 각각 총장의 재가를 얻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② 이 내규는 학교 정관, 학칙, 직제규정, 본 규정 등에 준하여야 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